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의뢰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홍덕의  
건명 : 윤희식 소유물(2025타경 591)  
감정평가서 번호 : 하나 250328-12-2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  
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하나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HANA Appraisal & Advisory Co.,Ltd.

Tel : 055-762-2200 Fax : 055-762-2303  
경남 진주시 사들로 16 이엘빌딩 3층 301호(충무공동)

# (부동산)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주)하나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지사장      구준수



감정평가사  
 정준규

*정준규* (인)

감정평가액	<b>이억칠백오만팔천원정 (₩207,058,000.-)</b>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홍덕의		감정평가 목적	경매		
제출처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윤환식 (2025타경 591)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 03. 31	2025. 03. 28 ~ 2025. 03. 31	2025. 03. 31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별	면적 또는 수량(m <sup>2</sup> )	종별	면적 또는 수량(m <sup>2</sup> )	단가	금액
	토지	8,278	토지	8,278	25,000	206,950,000
	제시외건물	(18)	제시외건물	18	6,000	108,000
		이	하	여	백	
	합계					₩207,058,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김지환*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소재 '전도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창원 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 건임.

## II.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2. 기준시점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3월 31일임.

###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3월 28일, 2025년 3월 31일에 실시하였음.

### 4. 감정평가조건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 III. 기타 참고사항

- ① 본건 토지의 제시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인 점을 고려하고, 현황 '일부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②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입목은 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바, 토지와 자생하는 자연생 입목을 일괄하여 평가하였음.
- ③ 본건 토지는 육안으로는 분묘가 확인되지 않으나 잡초목 등에 가려진 분묘가 존재할 수 있는 바, 경매 입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④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부합물 및 종물 성질의 제시외건물 일련번호(ㄱ)은 미등기 건물로서 개략적으로 실측하였으며, 구조, 용도, 사용자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법을 평가하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관찰감가하였으며,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 ⑤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철거 및 이설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 보일러, 물탱크, 야적된 자재 등이 소재함.
- ⑥ 본건 토지의 명확한 경계확인에는 지적측량이 요구되는 바, 경매시 참조하시기 바람.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제시외 건물)	240-1	임야	계획관리지역	8,278	8,278	25,000	206,950,000	현황 일부 잡종지 및 도로
ㄱ	상동	240-1 위 지상	창고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18)	18	6,000	108,000	관찰감가 30,000 x3/15
<b>합 계</b>								<b>₩207,058,000.-</b>	
이 하 여 백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 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I.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감정평가액 = 토지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 1. 토지 감정평가액

#### (1) 대상 토지의 현황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m <sup>2</sup>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m <sup>2</sup> )
1	고전면 전도리 240-1	8,278	임야	자연림 및 일부 잡종지 및 도로	계획관리	세로(가)	부정형 완경사	4,710

#### (2) 토지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3)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 가.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 공시지가 (원/㎡)	비고
A	고전면 전도리 산3	19,835	임야	자연림	계획관리	세로(불)	부정형 급경사	3,700	-

#### 나.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표준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고
#A 계획관리 지역	0.173	경상남도 하동군 (25.01.01~25.03.31 ) 2025.01.01 ~ 2025.02.28 : 0.112 2025.02.01 ~ 2025.02.28 : 0.055  ( 1 + 0.00112 ) * ( 1 + 0.00055 * 31/28 ) ≒ 1.00173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인 경우,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 다.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라. 개별요인 비교

■ 임야지대 [일련번호1 / 표준지A]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지역과의 접근성	1.20	본건이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함.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35	본건이 비교표준지 대비 자연조건(일조, 지세, 방위 등)에서 우세함.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0.99	본건이 비교표준지 대비 행정적조건(본건 일부 현황 도로 등)에서 열세함.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1.604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판례(2003다38207(2004.05.14선고), 2002두5054(2003.07.25선고))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 (나) 인근 토지의 가격수준

구 분	주위환경	도로조건	지가수준(원/㎡)	기타
인근 유사 토지	지방도주변 산림지대	세로(가)	20,000-30,000	계획관리

#### (다) 본건 평가사례

본건의 최근 3년 이내의 평가사례는 포착되지 아니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라) 인근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토지 면적(m <sup>2</sup> )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m <sup>2</sup> )	비고
(1)	금남면 진정리 산7*~*	7,202	계획관리	임야 자연림	2022.10.19	담보	14,000	-
(2)	금남면 진정리 산7*~*	4,958	계획관리	임야 자연림	2021.12.10	일반거래	18,500	-
(3)	금남면 계천리 산*~**	2,789	계획관리	임야 자연림	2020.09.05	법원경매	19,0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마) 인근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고전면 대덕리 4**~*	계획관리 임야/토지임야	207,340,000원 (@ 21,000원/m <sup>2</sup> )	2024.09.09 -	9,792.5m <sup>2</sup> -	-
	의견	1)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2) 토지가격 : 207,340,000원 / 9,792.5m <sup>2</sup> ≈ 21,000원/m <sup>2</sup>				
#2	고전면 고하리 산1**~*	계획관리 임야/자연림	21,000,000원 (@ 34,000원/m <sup>2</sup> )	2021.07.21 -	611m <sup>2</sup> -	-
	의견	1)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2) 토지가격 : 21,000,000원 / 611m <sup>2</sup> ≈ 34,000원/m <sup>2</sup>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바)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 ① 개요 및 산식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평가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평가사례기준 표준지가격 (사례단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 ② 보정치 산정

#### < 비교표준지 A >

평가사례 기준 표준지가격 (a)	사례단가 <sup>1)</sup> (원/㎡)	시점 <sup>2)</sup> 수정	지역 <sup>3)</sup> 요인	개별 <sup>4)</sup> 요인	산출단가 <sup>5)</sup> (원/㎡)	격차율 (a/b)	보정치 결정
	14,000	1.01199	1.000	1.100	15,584	4.204	4.20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b)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sup>5)</sup> (원/㎡)		
	3,700	1.00173	-	-	3,706		

<sup>1)</sup>평가사례 : 비교표준지A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1)을 선정함.

<sup>2)</sup>시점수정(2022.10.19 ~ 2025.03.31, 하동군 계획관리지역) : 1.199% (1.01199)

<sup>3)</sup>지역요인 : 비교표준지A는 평가사례(1)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sup>4)</sup>개별요인 : 비교표준지A가 평가사례(1)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함.

개별요인 비교치 (임야지대)				격차율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10	1.00	1.00	1.00	1.100

<sup>5)</sup>산출단가 : 원단위 미만 절사.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m <sup>2</sup> )	시산가액 (단가)(원/m <sup>2</sup> )	비고
	일련 번호	공시지가 (원/m <sup>2</sup> )							
1	A	3,700	1.00173	1.000	1.604	4.20	24,969	25,000	임야지대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 (4)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 가. 비교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에 관한 의견	비교 거래사례
본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1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고전면 대덕리 4**.*	계획관리 임야/토지임야	207,340,000원 (@ 21,000원/m <sup>2</sup> )	2024.09.09 -	9,792.5m <sup>2</sup> -	-
	의견	1)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2) 토지가격 : 207,340,000원 / 9,792.5m <sup>2</sup> ≒ 21,000원/m <sup>2</sup>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에 관한 의견	사정보정치
비교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다.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거래사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1 계획관리	0.415	경상남도 하동군 (24.09.09~25.03.31 ) 2024.09.01 ~ 2024.09.30 : 0.068 2024.10.01 ~ 2024.10.31 : 0.056 2024.11.01 ~ 2024.11.30 : 0.066 2024.12.01 ~ 2024.12.31 : 0.070 2025.01.01 ~ 2025.02.28 : 0.112 2025.02.01 ~ 2025.02.28 : 0.055  $( 1 + 0.00068 * 22/30 ) * ( 1 + 0.00056 ) * ( 1 + 0.00066 ) *$ $( 1 + 0.00070 ) * ( 1 + 0.00112 ) * ( 1 + 0.00055 * 31/28 )$ $\approx 1.00415$

### 라.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마. 개별요인 비교

■ 임야지대 [일련번호1 / 거래사례#1]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지역과의 접근성	1.05	본건이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함.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20	본건이 사례 대비 자연조건(일조, 지세 등)에서 우세함.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0.99	본건이 사례 대비 행정적조건(본건 일부 현황 도로 등)에서 열세함.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1.247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m <sup>2</sup> )	시산가액 (단가)(원/m <sup>2</sup> )
	일련 번호	토지단가 (원/m <sup>2</sup> )						
1	#1	21,000	1.000	1.00415	1.000	1.247	26,295	26,000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 (5)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 가. 토지 시산가액(단가) 검토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 (원/m <sup>2</sup> )	거래사례비교법 (원/m <sup>2</sup> )	비고
1	25,000	26,000	-

#### 나.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합리성이 인정되는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으로 평가단가를 결정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II.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  
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감정평가액	토 지	206,950,000 원
	제시외건물	108,000 원
	합 계	207,058,000 원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참고가격 자료(평가사례, 인근 부 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낙찰가율 통계분석 등)를 고려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상 기 평가액으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	---

### 2. 기타 참고사항

--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소재 '전도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방도주변 산림지대로서, 농촌마을, 농경지, 임야,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교통상황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3) 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현황 일부 잡종지 및 도로 상태임.

###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일부가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이며, 북서측으로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도 및 건물 개황도'상 도시된 부합물 및 종물 성질의 제시외건물 일련번호(ㄱ)은 구조, 규모,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토지 사용 및 수익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7)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자연림 및 현황 일부 잡종지 및 도로 상태임.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임대관계: 미상임.
- 2) 기타사항: 본건 일부 지상에 철거 및 이설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 보일러, 물탱크, 야적된 자재 등이 소재함.

#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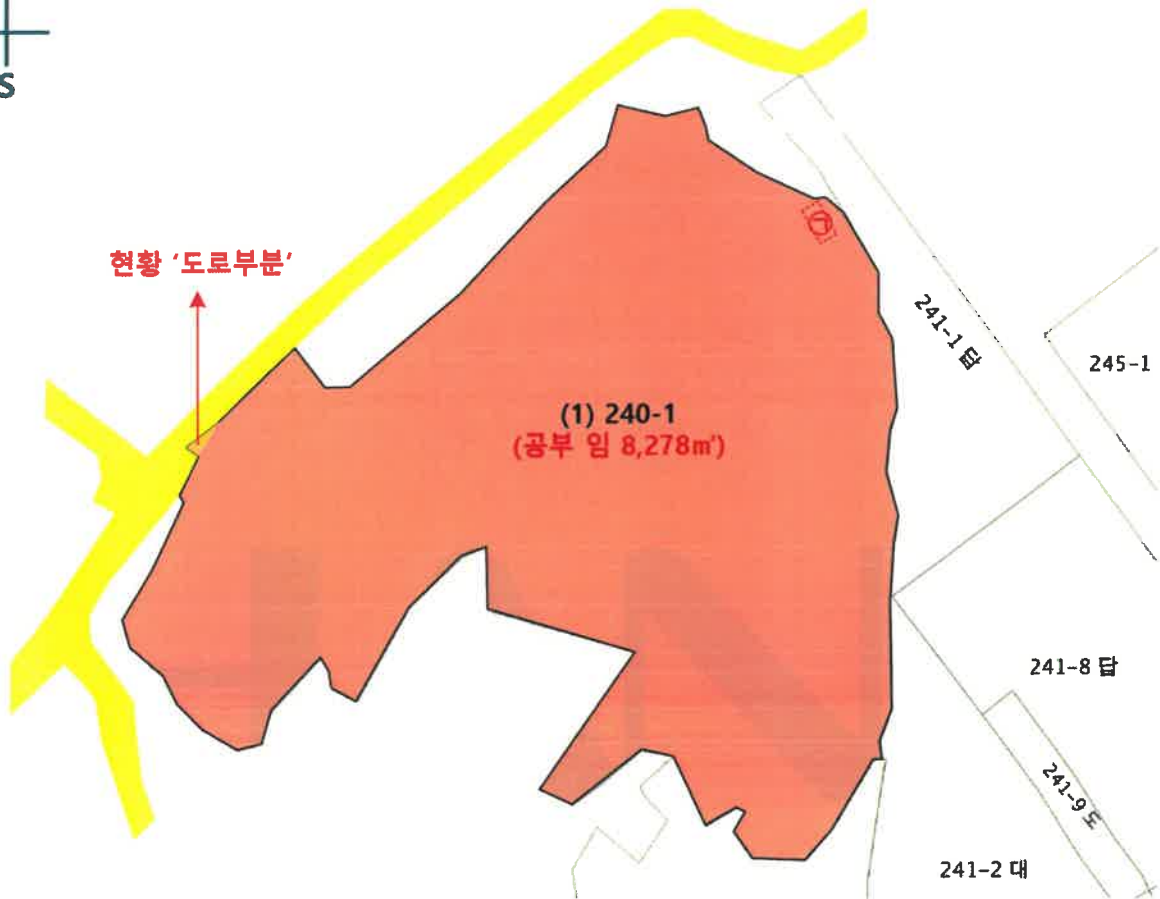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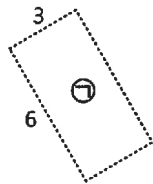


# 지 적 도

S : 1 / 1200



Non-Scale



[제시의 건물]

일련번호 ㄱ) 목조 스투지붕 단층, 창고 : (6×3)≒18㎡

\* 본 개황도는 현장조사에 의거 개략적으로 도시한 '참고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한 지적측량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범례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3층이상
		도로선		평가건물1층		평가제외건물
		도시계획선		평가건물2층		제시외건물

# 사 진 용 지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40-1
-----	------------------------



본건 및 주위 전경



본건 및 주위 전경



본건 전경



본건 일부 전경

# 사 진 용 지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40-1
-----	------------------------



본건 일부 전경



본건 일부 전경



본건 일부 전경



본건 일부 전경

# 사 진 용 지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40-1



본건 일부 전경



본건 일부 전경



본건 일부 전경



일련번호(ㄱ) 전경

최고의 인재 최상의 팀웍 최적의 솔루션

**HANA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문서번호 : 250328-12-201호

시행일자 : 2025. 04. 02

수 신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홍덕의

참 조 : 경매2계

제 목 : 감 정 평 가 회 보

1. 우리 (주)하나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2025.03.26자 귀 제 2025타경 591호로 의뢰하신『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40-1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3. 우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행)에 따라 2010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오니 필요사항을 하단에 기재된 재무팀 팩스나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사본, 담당자성명, 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별	첨 :	1. 감정평가서	1 부
		2. 청구서	1 부
		3. 공부서류	1 부 끝.

**(주)하나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지 사 장 구 준 수



담당감정평가사 : 정준규

우편 52854 경남 진주시 사들로 16 이엘빌딩 3층 301호(충무공동)

TEL 055-762-2200 FAX 055-762-2303 <http://www.hgrea.co.kr>

(회계팀)TEL 055-762-2200 FAX 055-762-2303 EMAIL : hana06@empas.com

# 수수료 청구서

감정평가서번호 : 250328-12-20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홍덕의 귀하

의뢰번호 : 2025타경 591

## 팔십오만육천구백원정 (₩856,900.-)

2025-03-26 일자 귀 제 『 2025타경 591 』 호로 의뢰하신 『 윤희식 소유물 』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구내역-

과목	금액	비고
가.평가수수료	507,226	$(422,763 \times (108,000 / 207,058,000) + (422,763 \times (206,950,000 / 207,058,000))) \times 1.5 \times 0.8$
나.여비	248,8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1동 x 10,000 【공부발급비】 토지이용계획 1,090 【기타 실비】 사진 1,000 x 12장 = 12,000원
물건조사비	10,000	
공부발급비	1,090	
임대차조사비	-	
기타 실비	12,000	
특별용역비	-	
소계	271,890	
수수료합계(공급가액)	779,000	* 1,000원미만절사
부가가치세(세액)	77,900	
총계	856,900	
기납부 착수금	-	
정산 청구액	856,900	

※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250328-12-20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사업자등록번호 : 613-85-12181

★계좌번호★

◆ 농협은행-진주시지부 : 805-17-002190

예금주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지사장 구준수



( TEL. : 055-762-2200 FAX. : 055-762-2303 )